

# 1회성 생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KC인증 간소화

- 1회성 생산하는 여러 모델의 어린이 놀이기구에 동일한 재료 적용 시 유해화학물질시험은 1개 모델만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KC인증 시험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 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1월 5일 개정하였다.

그간 1회성으로 제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생산할 때마다 모델별로 제품검사를 받아야 했고, 특히 동일 재질로 여러 모델을 생산하는 경우 같은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모델별로 각각 유해화학물질시험\*을 받아야 해서 업체의 부담이 있었다.

\* 유해화학물질시험 비용(재질 1개 기준) : 유해원소 용출(9~10만원), 유해원소 함유량(4만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12~15만원, 합성수지제에 한함)

금번 안전기준 개정으로 동일 재료가 적용된 어린이 놀이기구 1개에 대해서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 (사례) 동일 재질(A목재 등)로 1회성 생산하는 그네·미끄럼틀·시소가 놀이터 1곳에 한번에 설치될 경우, 그간 그네·미끄럼틀·시소 모델별로 A목재의 유해화학물질시험을 각각 하였으나, 앞으로는 설치 놀이기구 중 1개만 실시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놀이기구 안전기준 시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함과 동시에 어린이제품 제조사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검사방법 효율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책임자	과 장	오재철 (043-870-5450)
		담당자	사무관	조영삼 (043-870-5574)

현행	개정안
<p>5. 검사방법 (중략)</p> <p>비 고</p> <p>1. 놀이기구에 물이 이용되는 경우는 물이용형으로 모델구분한다.</p> <p>2. 재질별 분류 (생략)</p> <p>3. 인증받은 모델에서 재료시험을 위한 합성수지, 도료 등의 색상만 다른 경우 동일모델로 간주하되 재료항목만 별도의 시험을 행한다.</p> <p>4. 다음의 경우에는 동일모델로 분류한다.</p> <p>가. 모델 구분에 따른 동일한 부품(기구)으로 조립되어 있으나 위치만 바뀐 경우</p> <p>나. 모델 구분에 따른 동일한 부품(기구)으로 조립되어 있으나 인증받은 모델에서 축소되는 경우</p> <p>다. 인증 받은 모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쳐서 동일 모델을 제조한 경우</p> <p>라. 흔들 놀이기구의 경우 모델 구분에 따른 동일한 구동방식(스프링, 축 등)으로 조립되어 있으나 형상만 다른 경우</p> <p>마. 인증받은 조합놀이대와 미끄럼틀, 그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쳐서 새로운 조합놀이대를 제조하는 경우 기 인증받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그네에서 유해화학물질 시험을 제외한다.</p>	<p>5. 검사방법 (중략)</p> <p>비 고</p> <p>(1. ~ 4.) 현행과 동일</p>
<p>(신설)</p>	<p>5.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7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정수량만 제조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놀이기구 중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재료로 여러 모델의 놀이기구를 동시에 설치할 경우, 이러한 재료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시험은 해당 재료가 적용되는 놀이기구 1개에 대해서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놀이기구 제조업자에게 해당 재료의 동일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